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빈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1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박수빈, 강석주, 김기덕,
김성준, 김재진, 남창진,
박승진, 박철성, 봉양순,
송도호, 오금란, 유정희,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임종국,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한 신,
홍국표 의원(22명)

1. 제안이유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권은 지방의회가 가지는 주요 권한 중의 하나임. 그러나, 현재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해 타당성과 완결성이 부족한 안건들이 반복적으로 의회에 상정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의회는 계획의 미비점을 인지하면서도 행정 공백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의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반려 시에는 행정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의회의 감독 통제 권한을 형해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됨.
- 또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는 등 집행부의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시의원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보다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에 시의원 참여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제6호)
- 나.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 처리 규정 명확화(안 제4조제4항)
-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의회 보고 의무 규정 신설(안 제11조제5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 및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본청 및 사업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6.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 중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작성·갖추어 두어야”를 “작성·보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인식할 수 없도록 비공개처리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관재산의”를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결 시, 그 삭제된”을 “의결한 경우, 해당 삭제”로, “아니한 경우”를 “않는 한”으로, “재상정 할”을 “재상정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산관리총괄관은 시의회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업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시의

회 보고 의무는 2015년 이후 의결된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결되어 시행 당시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공유재산심의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의회 의원의 참여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심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행규칙 개정) 서울특별시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삭제 <신설> <신설>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본청 및 사업소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및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5. 본청 및 사업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6.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 중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
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⑦ (생략)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
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④ -----
-- 작성 · 보관하여야 -----

-----, 다
만, 공개에 의하여 심의 ·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
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정보를 인식할 수 없도
록 비공개처리한 후 공개하여야 한
다.

⑤·⑥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 시의회 -----

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④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신설>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 소관의 공유재산 -----

-----.

④ -----
----- 의결한 경
우, 해당 삭제 -----
않는 한 -----
----- 재상정할 -----.

⑤ 재산관리총괄관은 시의회 의결
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
여 사업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¹⁾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안²⁾에 대하여 일부 변경 및 추가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
- 1) [구성원에 의한 재정소요 변동 검토] 해당규정은 위원 총 정원을 유지한 채 위원의 자격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주된 재정소요 변동요인인 총 정원과는 관련이 없으나 위원 신분에 따라 위원회 운영비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가령, 회의 참석 시 민간위촉 위원은 참석수당(1인 1회 200,000원)과 업무추진경비(1인 30,000원)가 전부 지급되나 공무원 신분인 위원은 참석수당이 미지급 되므로 이를 주안점으로 두고 추가비용 여부를 검토해야 함
 - ⇒ 검토결과 해당규정은 민간위원이 아닌 공무원과 시의원 신분인 위원회 위원이 추가된 사안이므로, 전체 위원회 운영 비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2) [보고 관련 사안으로 재정소요 부재] 해당규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제2차 정례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의회 보고는 통상적 의회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 제외함